

통일부 예규 제23호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국내반입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9. 4. 10.

통 일 부 장 관

# 개성공업지구 폐기물 국내반입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장 총 칙

### I. 목 적

- 이 지침은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4조,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환경보호규정시행세칙』 북측 최종통지문(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지시제5호 주체(97(2008)년 9월15일) 제29조·제30조·제33조, 『개성공업지구 폐기물관리준칙』 제9조에 의거 개성공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폐설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국내로 반입 및 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II. 용어정의

- “폐기폐설물”이란 개성공업지구내에서 발생하는 중고품을 포함하여 생산과 건설, 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용가치가 적거나 전혀 없는 물체 또는 물건을 말한다.
- “유독성물질”이란 독성을 가진 시약과 원료를 비롯하여 적은 양이라도 노출 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 “독성이 강한 (특정)유해물질”이란 사람의 생활과 건강, 동식물의 생육, 재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 “폐기폐설물처리시설”이란 폐기폐설물의 재생이용시설·소각시설·매몰시설 등 『환경보호규정시행세칙』 북측 최종통지문(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지시제5호 주체(97(2008)년 9월15일) 부록 20의 시설을 말한다.
- “재생이용”이란 폐기폐설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말한다.
- “국내반입 폐기폐설물”이란 개성공업지구내에서 발생하는 폐기폐설물중 개성공업지구 폐기폐설물처리시설(매립, 소각)에서 처리할 수 없는 폐기폐설물 또는 국내에서 재생이용 할 수 있는 폐기폐설물을 말한다.

### III. 적용범위

- 개성공업지구 내 폐기폐설물중 국내반입 대상
- 개성공업지구 내 폐기폐설물의 국내반입 절차
- 국내반입 폐기폐설물의 처리절차
- 폐기폐설물 처리상황 기록·보존 등
- 국내반입 폐기폐설물 전문처리업체의 관리감독 절차 등

## Ⅳ. 기관별 업무분장

### 1. 통일부

가. 폐기폐설물 처리실적 관리 및 환경부 통보

- (1)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으로부터 처리실적 접수, 관리 및 관련 기관 통보
- (2) 개성공업지구 내 발생 폐기폐설물 적정처리 지도

### 2. 환경부

가. 국내 반입 폐기폐설물의 적정처리 지도·감독

- (1) 폐기폐설물 적정처리 이행 실태조사
- (2) 국내반입 폐기폐설물 수집·운반·처리업체 지도·감독

### 3.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이하“관리기관”이라 한다)

가. 폐기폐설물 처리신청서(사업장배출자신고서) 접수 및 승인

- (1) 사업계획서상 폐기폐설물 성상, 종류, 배출량 등 확인
- (2) 폐기폐설물분석결과서(관리기관 지정 분석전문기관) 확인  
※ 사업장 폐기폐설물 배출자 신고시 폐기폐설물분석결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3)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장폐기폐설물 처리업체로 등록된 허가증 사본 확인
- (4)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등록된 허가증 사본 확인
- (5) 폐기폐설물처리계약서 사본 확인

나. 폐기폐설물 반출신고 접수 및 반출검사 실시

다. 폐기폐설물 처리실적 관리 및 처리결과 관계기관 자료제출

## 제2장 반·출입 절차

### 1. 국내 반입시기 및 대상 폐기폐설물

#### 1. 국내 반입시기 및 기간

- 가. 재생이용 폐기폐설물은 이 지침이 발령한 날부터 반입한다.
- 나.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폐설물중 현지 폐기폐설물처리 시설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폐설물에 대하여는 개성공단 2차 소각장(50톤/일) 가동시점까지 국내에 반입하여 처리한다.

#### 2. 국내 반입 대상 폐기폐설물 종류

가. 재생이용 폐기폐설물

- (1) 국내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신고를 한 자 또는 중간처리업(재활용 전문업체) 허가를 받은 자에게 국내에 반입하여 재생이용 처리 하는 것으로 관리기관에 신고한 폐기폐설물
  - 폐지, 폐목재, 폐고철 기타 재생이용(페스크랩, 페프라스틱, 감용 페스티로플 등)이 가능한 폐기폐설물로 관리기관이 지정한 폐기폐설물

나. 현지 폐기폐설물처리시설(매립장·소각장)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폐설물

- (1) 현지 폐기폐설물처리시설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폐설물로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국내에 반입하여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관리기관에 폐기폐설물처리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은 폐기폐설물
  - (특정)유해 폐기폐설물중 폐페인트, 폐유기용재, 폐유(절삭유), 유독성물질 등 소각장 등 폐기폐설물처리시설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폐설물

## II. 폐기폐설물 국내반입 절차

### 1. 폐기폐설물 반입 승인

가. 개성공단에서 폐기폐설물을 국내로 운반하여 폐기폐설물 처리 시설에서 적정하게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수집·운반, 처리업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일부장관의 **물품 반·출입 승인을 하여야 한다.**

#### (1) 반입승인 신청서류(전산처리)

- 북한 물품 반·출입승인신청서(남북교류협력시스템상 직접작성)
- 첨부서류
  - 폐기폐설물 처리계획서 [사업장 폐기폐설물배출자 신고필증(별지 제1호 서식) 사본]
  - 폐기폐설물 수집·운반, 처리 계약서
  - 물품(폐기폐설물) 반출입 승인서
    - ※ 다만, 재생이용 폐기폐설물은 시고서 사본으로 같음
  -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승인 받은 수집·운반, 처리업자 허가서 사본
  - 폐기폐설물 분석결과서(별지 제2호 서식)
    - ※ 재생이용 폐기폐설물은 제외

#### (2) 승인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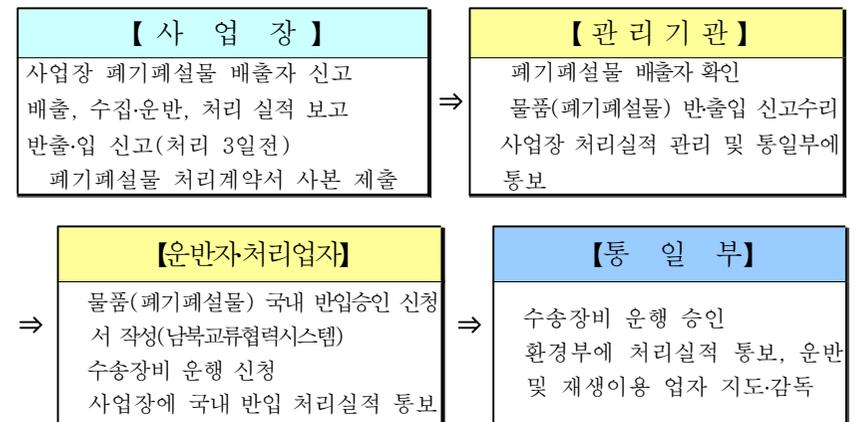
#### (3) 승인신청 전자민원 신청안내 및 서식

- (가)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inter-korea.unikorea.go.kr>)에 우선 사용자등록(ID)을 한 다음 해당 민원메뉴를 찾아서 신청
- (나) 처리상황(확인요망, 처리중, 승인 등)은 MY PAGE에서 확인가능하고 승인공문은 처리 상황란의 "승인(수리)"를 더블 클릭하여 출력·활용(한글 2002가 설치된 경우에만 승인공문 출력 가능)
- (다) 물품 반·출입신청서 처리
  - 접수일로부터 15일(처리기한), 승인기간 12월이내
- (라) 교역보고
  - 통관 완료후 10일이내
  - 교역보고서 : 남북교류협력 시스템상에서 직접작성
  - 관련서류 첨부 : 스캔 받아서 파일(.jpg)업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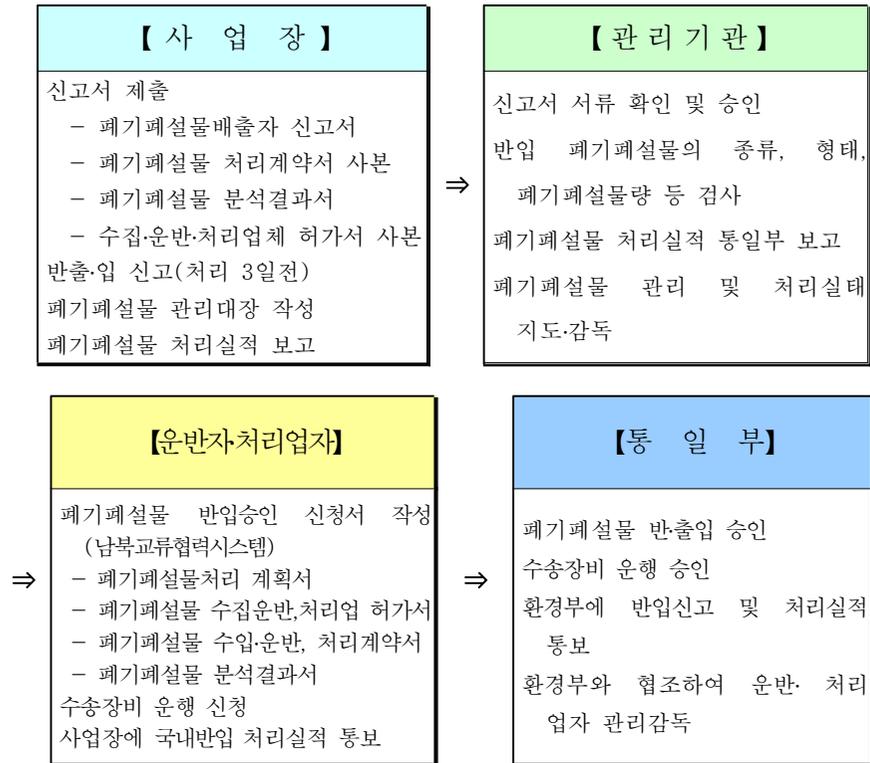
## 2. 국내반입 폐기폐설물 처리절차

### 가. 국내반입 처리 절차

#### (1) 재생이용 폐기폐설물처리 절차



(2) 현지 폐기폐설물처리시설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폐설물 처리절차



- ◆ 개성공단에서 반출전 사전검사는 관리기관의 폐기폐설물 처리시설 수탁 기관에서 검사후 반출하여야 한다.
- ◆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전산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전산 등록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내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반입폐기폐설물을 처리하는 즉시 처리 결과를 관리기관과 통일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국내에서 처리된 폐기폐설물 처리실적은 『폐기물관리법』 제58조(폐기폐설물 처리실적보고)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나. 폐기폐설물 배출자신고서 제출시기 및 제출서류

(1) 재생이용 폐기폐설물

(가) 신고시기

-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폐설물을 배출 3일전까지

(나) 신고자 및 신고기관

- 폐기폐설물 배출자가 관리기관에 신고

(다) 제출서류

- 폐기폐설물 배출자(재생이용)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 폐기폐설물 수집·운반·처리 계약서 사본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재생이용수집·운반·처리 허가(신고)필증 사본

(2) 현지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폐기폐설물 처리절차

(가) 신고시기

-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폐설물 배출 3일전까지

(나) 제출서류

- 폐기폐설물배출자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 폐기폐설물 반·출입 승인서 사본(사업장 폐기폐설물 국내 반입시)
  - 폐기폐설물 분석 결과서(별지 제2호 서식)
  - 폐기폐설물 처리 계약서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수집·운반업자 허가(승인) 사본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 ※ 다만, 동일한 폐기폐설물을 동일한 처리업자가 처리할 경우에는 폐기폐설물 배출자 신고서만 제출

다. 신고기관(수리권자)

- (1) 개성공업지구를 관리하는 관리기관 이사장에게 신고
- (2) 관리기관 이사장은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기 폐설물 배출자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며, 동일한 폐기 폐설물에 한해서는 추가로 신고필증을 발급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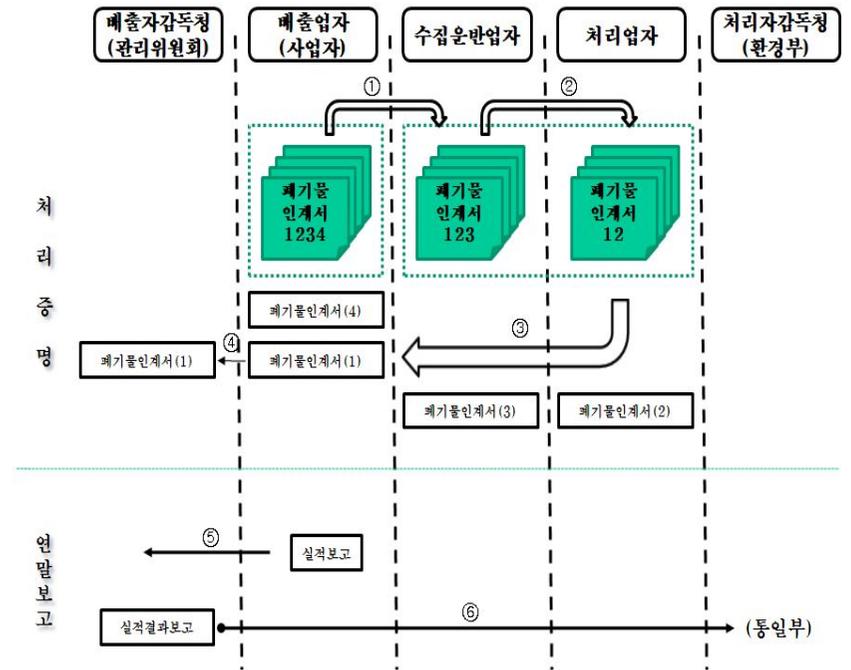
라. 폐기폐설물 배출자신고서 검토요령

- (1) 폐기폐설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선정되었는지 여부 확인
- (2) 폐기폐설물분석결과서를 확인하여 폐기폐설물처리업체에서 처리가 가능한 폐기폐설물인지 여부 확인

마. 국내 반입 폐기폐설물 인계·인수

- (1) 국내로 반입하여 처리하는 폐기폐설물(재생이용 폐기폐설물 제외)에 대하여는 폐기폐설물인계서를 작성 (4매 전표)하여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 (2) 국내로 반입한 폐기폐설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자는 『개성공업지구 폐기물관리준칙』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내 『폐기물관리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3) 폐기폐설물인계서 작성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 (4) 폐기폐설물인계서 흐름 및 인계시기

(가) 폐기폐설물 인계서 흐름도



1) 작성 및 인계시기

가) 폐기폐설물 배출자

- 운반자·처리업자에게 폐기폐설물을 인계하는 때에는 폐기폐설물인계서 해당란을 기재·확인하고 폐기폐설물인계서 4매작성하여 운반자에게 발급
- 국내반입 처리실적을 관리기관에 매년 실적을 다음년도 1월31까지 제출
  - ※ 폐기폐설물 인계서는 연도별 구분하여 번호란에 일련 번호를 부여

나) 운반자

- 폐기폐설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폐설물인계서를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폐설물인계서(4)를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폐기폐설물과 함께 처리업자에게 인계

다) 처리자(처리업자)

- 폐기폐설물을 인수받은 때에 인계 받은 폐기폐설물인계서(3매)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폐설물인계서(3)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폐설물인계서(2)는 보관하고 폐기폐설물 인계서(1)은 배출자에게 송부

라) 폐기폐설물 처리 감독청

- 관리기관은 폐기폐설물 배출자가 관리기관에 제출한 폐기폐설물처리실적을 처리업체별로 집계하여 통일부에 보고하고 통일부에서는 환경부에 국내 폐기폐설물 반입 결과를 통보

2) 폐기폐설물인계서 작성시 유의사항

-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할 것.
- 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 다)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 제3장 기록보존 등

### 1. 폐기폐설물처리상황 기록 및 보존 등

#### 1. 폐기폐설물처리실적 기록

가. 사업장폐기폐설물 배출자 신고를 한자

- (1) 폐기폐설물 관리대장을(별지 제4호 서식) 폐기폐설물 종류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2. 기록물의 보존기간

가. 국내 반입관련 서류

- (1)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자료 보존

(가)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도별로 보관

#### 3. 실적보고

가. 제출기간

- (1) 매년도별 폐기폐설물 발생·수집·운반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1월31까지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이를 취합·정리하여 통일부 및 환경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실적보고 내용

- (1) 폐기폐설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
- (2) 재생이용폐기폐설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 ※ 폐기폐설물 발생·수집·운반·처리실적은 『폐기물관리법』의 양식에 의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 4. 폐기폐설물 배출사업장 관리

##### 가. 사업장폐기폐설물 배출자신고 사업장 관리

- (1) 사업장폐기폐설물 배출자신고서를 수리한 관리기관 이사장은 배출자신고의 적정유무, 허위신고 유무, 신고한 사항대로 폐기 폐설물을 국내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
- (2) 확인결과 허위신고 또는 신고 사항대로 미이행 하였을 경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이행
- (3) 현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폐설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

##### 나. 반입폐기폐설물 국내 처리사업장 관리

- (1) 환경부에서는 수집·운반 및 최종처리사업자에 대하여 증명 서류의 허위증명 유무, 처리방법에 따라 폐기폐설물을 위탁 처리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
- (2) 확인결과 허위증명 또는 처리방법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이행

##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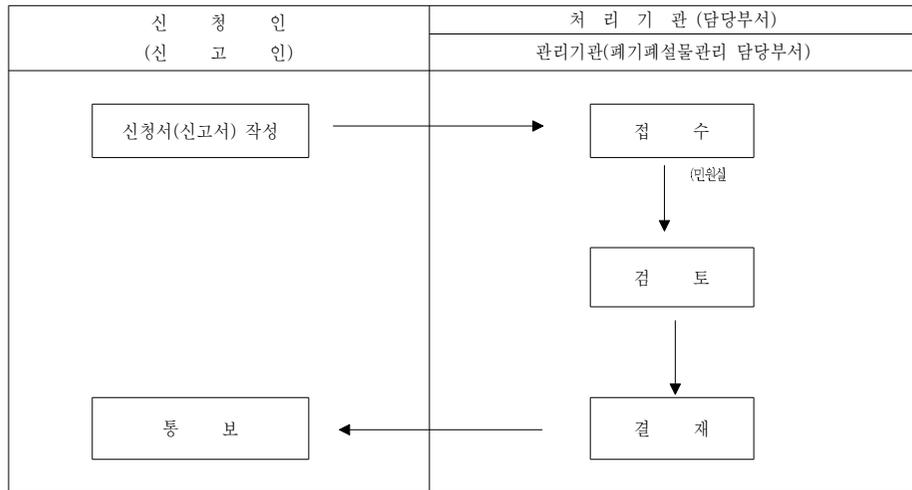
(앞쪽)

폐기폐설물배출자(재생이용)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 고 인	① 상호 (명 칭)			② 기업등록번호				
	③ 성명 (대표자)			④ 생 년 월 일				
	⑤ 주소 (사업장)	(전화 : )						
⑥ 업 종	⑦ 주원료명 및 사용량 (톤/연)			⑧ 주생산품명 및 생산량 (톤/연)				
⑨ 제조공정								
사업장폐기폐설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⑩ 폐기폐설물의 종 류	⑪ 성상	⑫ 배출량		⑬ 운반		⑭ 처리		
		톤/월	톤/연	운반자	운반량	처리구 분	업소명	처리 방법
⑮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㉑ 변경사유								
『개성공업지구 폐기물 사업준칙』 제7조 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폐설물배출자의 <input type="checkbox"/> 신고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수 수 료
1.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 음
2. 사업장폐기폐설물배출자신고필증								

(뒤쪽)

<작성요령>

- ⑥란은 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업증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⑨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점으로부터 최종제품이 출하될 때까지의 전공정을 작업단위별로 작성하되, 원료·부원료·첨가물의 투입점과 폐기폐설물의 배출점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⑩란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일반폐기폐설물을 기재하되, 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오니·동식물성잔재물·폐목재류·폐가죽류·폐섬유류·폐고무류·금속류·연탄재·음식물·채소류·폐유리류·폐플라스틱류·기타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⑪란은 고상 또는 액상으로 구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⑬란의 운반자는 자가운반의 경우에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⑭은 『처리구분』은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기재하고 『처리방법』은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소각·매립·수출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국내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재생이용·중간처리·매립·해역배출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간처리의 경우에는 팔호안에 소각·중화·고형화 또는 안정화 등으로 처리방법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중간처리(소각) 등
  - 변경신고의 경우 ① 내지 ⑤, ※ 및 ㉠만을 기재하고,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업장폐기폐설물배출자신고필증을 제출합니다.
  - 기타 관련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앞 쪽)

폐기폐설물 분석 결과서						
제출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⑥폐기폐설물종류 (분류번호)	⑦발생량 (kg/월)	⑧성질 · 상태	⑨처리방 법	⑩특성 및 취급 시 위험성분	⑪유해물질별 함유량	⑫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개성공업지구 폐기물사업준칙』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폐기폐설물분석결과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span>년 월 일</span> </div>						
제출인: (업소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이사장 귀하						

<작성 요령>

(뒤 쪽)

- ⑥란의 세분류명과 분류번호를 함께 적고, 처리계획서 상의 폐기폐설물별로 적어야 합니다.
- ⑩란에는 폐기폐설물의 포장 시, 공기접촉 시, 일정온도 이상 상승 시 반응으로 발생 되는 가스의 종류와 폐기폐설물 자체의 위험성분, 처리 후 잔재물의 위험성분 등을 적어야 합니다.
- ⑪란은 폐기폐설물에 대하여 폐기폐설물공정 시험방법에 따른 용출시험결과에 따라 용출된 유해물질함유량을 적어야 합니다.
- ⑫란에는 폐유의 경우에는 유분 함량을, 폐유기용제의 경우에는 용제 함량을,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함유폐기폐설물의 경우에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량을, 폐유독물의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명칭을 적고 에너지를 회수하려는 폐기폐설물은 해당 폐기폐설물의 저위 발열량을 적어야 합니다.
- 기타 관련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폐기폐설물인계서(1)

<청 색>

(앞쪽)

1	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	①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③업 소 명												
배출자	④소 재 지	(전화: )											
	⑤폐기폐설물 종류	⑥폐기폐설 물분류번호				-			-			⑦ 위 탁 량	kg
	⑧폐기폐설물 성상	고상=1, 액상=2											
	⑨처 리 장 소												
	⑩업 소 명	⑪사업자등록번호					-			-			
운반자	⑫소 재 지	(전화: )											
	⑬차량종류	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기타=3		⑭차량번호									
	⑮수집·운반차량증번호	운반일자		년 월 일									
	운반장소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			-			
처리자	사무실소재지												
	시설소재지												
	시설명	처리예정일자		년 월 일									
	처리 방법	처리방법분류번호											
	확인	배 출 자		운 반 자		처 리 자							
직위 : 성명 : (서명)		직위 : 성명 : (서명)	직위 : 성명 : (서명)										
검인													

210mm×297mm  
(노카본지 50g/m<sup>2</sup>)

<작성요령>

(뒤 쪽)

1. 작성대상

가.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폐기폐설물중 처리가 곤란한 폐기폐설물을 국내에 반입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배출·운반·처리하는 자

2. 업소별 기재항목

가. 배출자(폐기폐설물관리책임자)는 ① 내지 ㉞의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운반자(운반관리책임자)로부터 ㉞의 운반자 확인란에 서명을 받는다.

나. 운반자는 처리자로부터 ㉞의 처리자 확인란에 서명을 받는다.

다. 처리자는 ㉞ 내지 ㉞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대상폐기폐설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후 ㉞에 확인·서명한다.

3.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 폐기폐설물배출자별로 폐기폐설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

나. ②③ 및 ㉞ : 관할세무관서에서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다. ③ 및 ④ : 폐기폐설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기재(전화번호는 지역번호까지 포함한다)하며, 업소의 소재지 및 폐기폐설물의 배출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모두 기재

라. ⑤ 및 ⑥ : 국내반입하는 폐기폐설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1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명칭 및 분류번호 기재

마. ⑦ : 위탁처리하는 폐기폐설물의 양을 kg단위로 기재

바. ⑧ : 해당되는 번호로 기재

사. ⑨당해 폐기폐설물을 처리하는 시설 소재지를 기재

아. ⑩ 및 ⑫ : 폐기폐설물을 운반하는 자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기재(전화번호는 지역번호까지 기재)

자. ⑬ : 차량종류별로 해당되는 번호를 기재하며,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는 경우 ⑬란 내지 ㉞란까지 운반순서에 따라 모두기재

차. ⑮ : 시·도 또는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에서 발급한 수집·운반차량증의 번호 기재

카. ㉞, ㉞, ㉞, ㉞ : 처리자의 업소명, 처리장이 있는 사무실 및 처리시설의 소재지, 처리시설의 종류 기재

타. ㉞ : 처리방법란에는 “위탁처리(재생이용)”과 같이 기재하고 처리방법 분류번호란에는 다음의 분류번호를 기재

처 리 방 법		분 류 번 호
위탁처리	재 생 이 용	정제[1001], 사료화[1002], 퇴비화[1003], 고형연료화[1004], 파쇄·분쇄[1005], 기타[1006]
	재 생 이 용	정제[2001], 사료화[2002], 퇴비화[2003], 고형연료화[2004], 파쇄·분쇄[2005], 기타[2006]
	중간처리	일반소각[2101], 고온소각[2102], 열분해[2103], 고온용융[2104], 압축[2105], 파쇄·분쇄[2106], 절단[2107], 용융[2108], 증발농축[2109], 유수분리[2110], 탈수·건조[2111], 멸균·분쇄[2112], 고형화[2103], 안정화[2104], 소멸화[2115], 중화[2116], 지방자치단체소각[2117], 국가소각[2118], 기타[2119]
	매 립	민간관리형매립시설[2201], 민간차단형매립시설[2202], 기타 매립시설[2204], 지방자치단체매립시설[2205], 국가매립시설[2206]
	해역배출	[2300]

비 고 : 국가소각 및 국가매립시설은 환경관리공단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파. ㉞확인 : 배출자·운반자·처리자가 폐기폐설물 운반·처리시 기재상황 및 처리상황을 확인하여 서명

하. ㉞검인 : 검인명령을 한 행정기관[시·도 또는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에서 확인한 후 검인

4. 고지사항

가. 이 폐기폐설물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거나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벌금에 처하게 되며, 관련법 규정에 정한 시기 내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작성시 유의사항과 달리 작성한 경우와 운반중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기관이나 소속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 이를 내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각각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5. 기타 관련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폐기폐설물인계서(2)

<노란색>

2	처리자 보관용	①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배출자	③업 소 명									
	④소 재 지	(전화 : )								
	⑤폐기폐설물 종류	⑥폐기폐설 물분류번호	-	-	⑦ 위 탁 량	kg				
	⑧폐기폐설물 성상	고상=1, 액상=2								
	⑨처 리 장 소									
운반자	⑩업 소 명	⑪사업자등록번호				-	-			
	⑫소 재 지	(전화 : )								
	⑬차량종류	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기타=3			⑭차량번호					
	⑮수집·운반차량증번호	운반일자		년 월 일						
	운반장소									
처리자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	-			
	사무실소재지									
	시설소재지									
	시설명	처리예정일자		년 월 일						
	처리방법	처리방법분류번호								
확인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직위 : 성명 : (서명)	직위 : 성명 : (서명)	직위 : 성명 : (서명)	직위 : 성명 : (서명)						
검인										

210mm×297mm  
(노카본지 50g/m<sup>2</sup>)

폐기폐설물인계서(3)

<녹색>

3	운반자 보관용	①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배출자	③업 소 명									
	④소 재 지	(전화 : )								
	⑤폐기폐설물 종류	⑥폐기폐설 물분류번호	-	-	⑦ 위 탁 량	Kg				
	⑧폐기폐설물 성상	고상=1, 액상=2								
	⑨처 리 장 소									
운반자	⑩업 소 명	⑪사업자등록번호				-	-			
	⑫소 재 지	(전화 : )								
	⑬차량종류	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기타=3			⑭차량번호					
	⑮수집·운반차량증번호	운반일자		년 월 일						
	운반장소									
처리자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	-			
	사무실소재지									
	시설소재지									
	시설명	처리예정일자		년 월 일						
	처리방법	처리방법분류번호								
확인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직위 : 성명 : (서명)	직위 : 성명 : (서명)	직위 : 성명 : (서명)	직위 : 성명 : (서명)						
검인										

210mm×297mm  
(노카본지 50g/m<sup>2</sup>)

폐기폐설물인계서(4)

<분홍색>

4	배출자 보관용	①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배출자	③업 소 명											
	④소 제 지	(전화 : )										
	⑤폐기폐설물 종류	⑥폐기폐설 물분류번호									⑦ 위 탁 량	kg
	⑧폐기폐설물 성상	고상=1, 액상=2										
	⑨처 리 장 소											
운반자	⑩업 소 명	⑪사업자등록번호										
	⑫소 제 지	(전화 : )										
	⑬차량종류	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기타=3		⑭차량번호								
	⑮수집·운반차량증번호	운반일자		년 월 일								
	⑯운반장소											
처리자	⑰업 소 명	⑱사업자등록번호										
	⑲사무실소재지											
	⑳시설소재지											
	㉑시 설 명	㉒처리예정일자		년 월 일								
	㉓처 리 방 법	처리방법분류번호										
확인인	배 출 자		운 반 자				처 리 자					
	직위 : 성명 : (서명)		직위 : 성명 : (서명)				직위 : 성명 : (서명)					
접인인												

210mm×297mm  
(노카본지 50g/m<sup>2</sup>)

[별지 제4호 서식]

(앞 쪽)

폐 기 폐 설 물 관 리 대 장												
(①) 폐기 폐설물의 종류:											(단위: 톤)	
② 발생내용				④ 위탁처리내용						⑤ 보관량	결재	
연월일	성질· 상태	발생량	발생량누계	연월일	위 탁 처리량	운반자	처리자	처리 방법	위탁처리량 누 계			

<작성요령>

(뒤 쪽)

- ①란은 폐기폐설물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사업장(일반)폐기폐설물은 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오니·동식물성잔재물·폐지류·폐목재류·폐가죽류·폐섬유류·폐고무류·금속편류·연탄재·음식물·채소류·폐유리류·폐플라스틱류 및 기타로, 건설폐기폐설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콘·폐벽돌·폐토사·폐목재·폐금속류·가연성폐기폐설물 및 기타로, 지정폐기폐설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지정폐기폐설물 종류로 분류하여 작성하며, 지정폐기폐설물 중 의료폐기폐설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의료폐기폐설물의 종류(인체조직물류 중 태반은 별도로 구분한다)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폐기폐설물의 발생 및 처리 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발생량 및 처리량의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합니다. 다만, 의료폐기폐설물의 경우에는 발생일은 전용 용기를 갖추어 둔 날짜와 밀폐포장한 날짜를 적고, 발생량은 밀폐포장 시 계량한 양을 적을 수 있습니다.
- 의료폐기폐설물 외의 지정폐기폐설물 배출자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폐설물의 2배 범위 이내 또는 같은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생일은 최초 보관하기 시작한 날짜와 처리한 날짜를 적고, 발생량은 처리 시 계량한 양을 적을 수 있습니다.  
예) 발생 연월일: 12.11~12.15., 발생량: 17kg
- 양은 무게단위인 톤(액체 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으로, 성질·상태는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 ③란 중 처리방법은 중간처리의 경우 일반소각·고온소각·재생이용 등으로 적고, 최종처리의 경우 매립·해역배출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④란 중 운반차란에는 폐기폐설물을 운반한 사업자명을 적되 배출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자가”로 적고, 처리차란에는 사업장폐기폐설물을 수탁받아 처리할 업소명(국내처리업소)을 적어야 합니다.
- 기타 관련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앞 쪽)

업소명									
우○○-○○/주소 /전화번호(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					시행일자				
문서번호					수신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이사장				
제목( 연도)폐기폐설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배출자용)					발신:				
①업소명		②소재지	분류번호	개성공단					
③대표자		④전화	⑤사업자등록번호						
⑥배출시설	1. 대기 중 2. 수질 중	⑦업종	( )□□□□						
⑧공단		⑨주 생산품		⑩종업원수	명				
⑪제품제조공정									
⑫사업장폐기폐설물배출자 신고 및 처리증명 확인사항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									
3. 관리번호 제 호									
4. 확인일: . . .									
⑬폐기폐설물처리시설 보유현황									
1. 시설명		2. 사용개시일		3. 처리능력(톤/일)			4. 처리량(톤/연)		
구분	종류	계	지정	일반	계	지정	일반		
중간처리시설	( )								
매립시설	( )	설치승인연적		매립가능용량		기 매립량(당해연도)			
		㎡		㎡		㎡			
⑭폐기폐설물 발생 및 처리현황									
1. 종류 (분류번호)	2. 총 발생량 (톤/연)	3. 성질·상태	4. 자가처리 처리량 (톤/연)	5. 위탁처리(톤/년)			6. 보관량 (톤/연)		7. 처리 비용 (천원)
방법	처리량 (톤/연)	방법	구분	처리 자	처리량	이월 보관량	누적 보관량		
( -- )									
( -- )									
( -- )									
( -- )									

<작성요령>

(뒤 쪽)

1. ②란은 별도 작성지침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되 우측에는 그 주소를, ⑤란은 세무서에 신고된 등록번호를, ⑧란은 별도 작성지침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2. ⑬란 중 1.에는 해당시설명 및 별도 작성지침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3. ⑭란 중 1.에는 지정폐기폐설물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세분류단위의 명칭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지정폐기폐설물의 분류번호를, 사업장일반폐기폐설물과 건설폐기폐설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작성지침에 따른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4. ⑭란 중 3.에는 성질·상태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1] 고상, [2] 액상
5. ⑭란 중 4. 및 5.의 방법란에는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6. ⑭란 중 5.의 방법란에는 제4호의 코드번호를 적고, 구분란에는 처리자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1] 재생이용신고자, [2] 중간처리업자, [3] 최종처리업자, [4] 해양배출업자, [5] 지방자치단체 처리시설, [6] 공공처리(국가)시설, [7] 기타
7. 기타 관련사항은(분류번호, 처리방법, 코드번호) 「폐기물관리법」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앞 쪽)

업 소 명										
우○○○-○○○/주소 담당부서			/전화번호( )○○○-○○○/전송( )○○○-○○○ 담당자							
문서번호 수 신 :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이사장 발 신 : ㉑						시행일자				
제 목 (    년도) 재생이용폐기폐설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①업소명: 대표자: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업종:				
④허가번호: 제    호			⑤영업대상 폐 기 폐 설 물		일반폐기폐설물:		지정폐기폐설물:		⑥종업원수	
신고번호: 제    호										
⑦ 시 설 및 장 비 명 세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설치승인일자		사용시작일자		소재지	
⑧ 재 생 이 용 현 황										
폐기폐설물 수집·운반 또는 재생이용내용					재생이용제품 판매 및 보관					
폐기 폐설 물 중 류	위탁 업소명	성 질 · 상 태	수 탁 량 (톤/연)	재 생 이 용 처 리 량 (톤/ 연)	보 관 량 (톤/연)	재 생 이 용 제 품 명	관 매 처 (전 화 번 호)	관 매 량 (톤/년)	관 매 액 (원/연)	보 관 량 (톤/연)

(뒤 쪽)

폐기폐설물 수탁 및 재생이용처리 내용							
①구 분	②종 류	③수 탁 량 (톤)	④성질· 상태	⑤처리방법	⑥처 리 량 (톤)	⑦보관량 (톤)	
합 계							
간재물 배출내용			간재물처리 의뢰내용				
⑧구 분	⑨ 종 류 (분류번호)	⑩배출량 (톤)	⑪성질·상 태	⑫ 처리지 구 분	⑬처 리 량 (톤)	⑭보관량 (톤)	⑮최 중 처리자 (지)명
합 계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기재)							
<p>&lt;작성요령&gt;</p> <p>①⑧ 수탁(간재)폐기폐설물 종류별 연번 기재, ②⑨ 지정폐기폐설물의 분류번호를 적고 그 외의 폐기폐설물은 폐기폐설물명 기재, ③⑩ 수탁(간재)폐기폐설물량 기재, ④⑪ 폐기폐설물의 상태 기재: 액상[1], 고상[2], ⑤ 폐기폐설물 처리방법 기재: 처리방법 및 분류기호 기재, ⑥⑬ 수탁(간재)폐기폐설물 처리량 기재, ⑦⑭ 수탁(간재)폐기폐설물 미처리 보관량 기재, ⑫ 간재물처리자 구분코드 기재: 재생이용신고자[1], 중간처리업자[2], 최종처리업자[3], 해양배출업자[4], 지방자치단체 매립지[5], 공공처리시설[6], 기타[7], ⑮ 최종처리자(시설)명을 기재하고 기타 관련사항은(분류번호, 처리방법, 코드번호) 「폐기물관리법」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p>							